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4-32호**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, 제24조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23-26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02월 02일

환경부장관

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, 제10호서식, 제13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